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 8. 24 선고 2021가단975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 고 A단체

피 고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8. 24.

주 문

1. 전남 완도군 C 학교용지 483㎡ 중 99/48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D 사이에 2020. 5. 1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D에게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20. 5. 15. 접수 제51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다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전남 완도군 C 학교용지 483㎡ 중 99/483 지분’이라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판사 편병호

별지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소의 D에 대한 구상채권자이고, D (이하, 채무자라 합니다.)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사해행위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자이고,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입니다.

2. 피보전 채권

원고의 채무자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차전 18 구상금 사건에 의한 청구채권은, 'E 은행 완도군지부가 채무자에게 원고의 신용보증부로 2018. 10. 22. 금100,000,000원을, 2018. 6. 7. 금150,000,000원을 각 대출하였으나 변제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2020. 12. 28. 금86,943,387원, 금131,334,391원을 각 대위변제한 사안과 관련하여, 채무자는 채권자(원고)에게 금218,941,126원과 그 중 금218,277,778원에 대하여 2021. 1. 5.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 연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2021. 2. 6. 확정된 지급명령이고, 채무자는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사해행위

가.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5. 14.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20. 5. 15. 접수 제5190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나. 비록 이 사건 법률행위 당시에는 원고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실제 발생하지 아니하였지만, 그 이전인 2018. 6. 7. 과 2018. 10. 22. 구상권의 기초되는 법률관계로써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 체결되

있고 그 계약에 기초하여 채무자에 대한 대출이 실행되었으나 불이행으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구상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 원고가 2020. 12. 28. 금218,277,778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구상권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채무자에 대한 이 사건 구상채권은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 당시 적극재산은 116,068,700원인데 반하여, 소극재산은 218,277,778원입니다. 이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한 매매계약은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더 크게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채무자의 딸로 사해의사를 알고 수익한 것이므로 악의있다 할 것입니다.

6.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D 사이에 2020. 5. 14.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D에게 판주지방법원 완도동기소 2020. 5. 15. 접수 제 51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